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운영 계획

① 제도 개요

□ 도입배경

- 그간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 발생

※ 국세는 '14.3월부터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과세전적부심사에는 '20년부터 적용)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청구를 무료로 대리

구 분	내 용	
위촉대상	▪ 세무경력 5년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임기2년	
신청요건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 5억 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 배우자 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 상 시가표준액 *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5억 미만)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신청 및 지정절차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3천만원이상 & 시행령요건 ** 1천만원이상&1년이상
	청구·신청인	▪ 신청요건을 갖추어 신청서 제출
대리인 위촉·관리	자치단체	▪ 요건충족여부 검토 → 대리인 선정 →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신청인·대리인)
	시도지사	▪ 대리인 통합 위촉·관리, 시군구 대리인 지정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에게 대리인 지정 요청

-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대리인의 임기·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도운영 사항은 조례에 반영('20.3.2. 시행)

2 협조 사항

□ 선정대리인 위촉 협조

-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 시행 후 납세자의 대리인 선정 요청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2월말까지** 대리인 위촉 예정
※ 시·도에서 일괄 위촉, 시·군·구에서는 시·도에 대리인 지정 요청
 - 협회에서는 위촉요청에 소속 회원이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홍보
- (추진일정) 법령 및 조례개정(안) 위촉기준에 따라 **위촉요청·모집공고 (~2월중)**,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 징구** 등 대리인 위촉(~2월말)

« 선정대리인 관련 주요내용 »

구 분	내 용
위촉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한정
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년, 1번에 한하여 연임 가능
위촉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②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그 밖에 제①호부터 제②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 지식기부를 통한 무료 불복업무 대리▪ (예외)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적 수당 지급 가능
선정 대리인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됨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 대한 표창▪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 등

□ 선정대리인 제도 홍보 협조

- (주요내용) 선정대리인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한 대국민 홍보 필요**
- (협조사항) 협회지 등 가용매체를 활용한 제도 홍보 및 각종 협회 행사 시 참석자 대상 제도 안내 등

참고1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

법률	시행령
<p>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p> <p>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p> <p>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p> <p>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p> <p>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p> <p>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p> <p>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 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p>	<p>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p> <p>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p>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배우자 소유 재산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을 포함한다)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 원을 말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2

대리인 제도 비교 및 업무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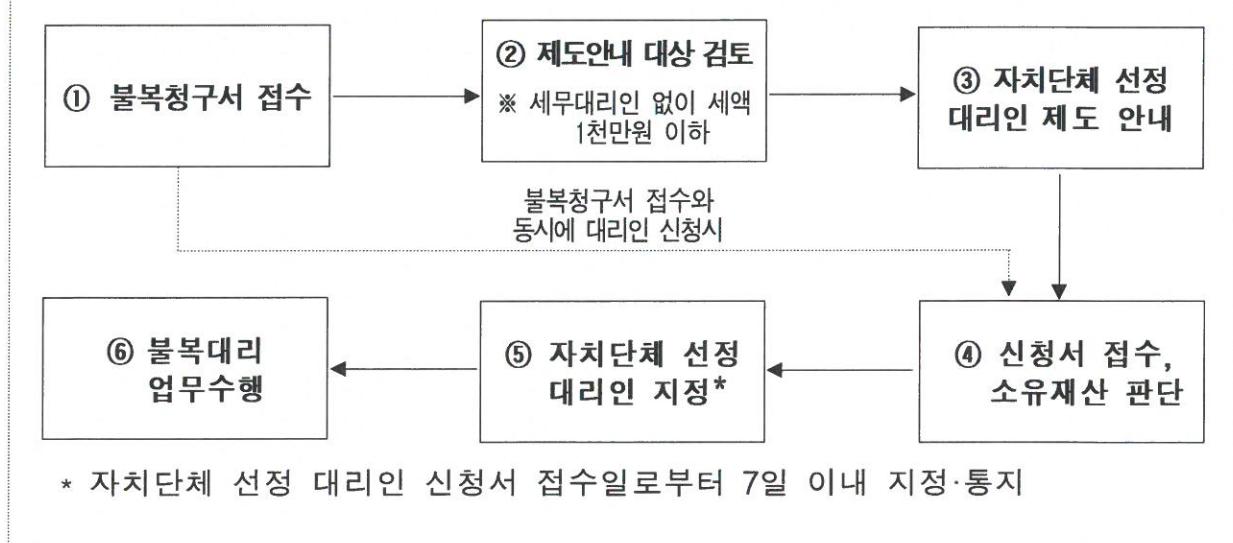
□ 대리인 제도 비교

국선대리인과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주요내용 비교

구분	국선대리인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위촉대상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좌 동>
임 기	2년(1회 연임)	<좌 동>
신청세액	청구세액 3천만원	청구세액 <u>1천만원</u>
적용요건	보유재산 5억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개인	보유재산 5억원 이하 (조례에서 따로 정함)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개인(배우자 포함) ※ 단,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보유재산 범위	부동산, 승용차, 골프·콘도회원권, 전세금, 주식·출자지분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적용제외 세목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담배·지방소비세, 레저세

□ 업무처리 절차(안)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업무처리 절차(안)



참고3**대리인 위촉 관련 서식[예시]**

■ 00시(도) 시(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00호서식]

00시·도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 기본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실 주소			
자격 구분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e-mail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 동의내용

- 본인을 00시·도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00시·도지사가 선정 대리인 지정통지를 한 때에 해당 불복청구에 대한 대리업무를 수임한 것으로 간주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지식기부를 통한 00시·도 선정 대리인으로서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등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 수집·이용목적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위촉, 지정통지 및 관리 등
- 수집대상 개인정보 : 동의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위촉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이내

☞ 상기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 (해당 □ 안에 √ 표시)

모두 동의함

모두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위촉이 제한될 수 있음

20 . . .

위 동의자

(서명)

귀하

서 약 서

본인은 00시·도 선정 대리인으로 재직하는 동안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지식기부에 참여한 00시·도 선정 대리인으로서 공직과 보람을
가지고 남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신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1. 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00시·도 선정 대리인 사건 지정을 거부
하지 않는다.
1. 본인은 00시·도 선정 대리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구체적 사건현황과
청구인의 개인정보 등에 대해 비밀을 엄수할 것이며, 00시·도 선정
대리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20 . . .

0000시·도 선정 대리인

성명 : (서명)

0000시도지사 귀하